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44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2. 제안이유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3조~제5조)
- 다. 지원신청 및 지급 등(안 제6조)
- 라. 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안 제7조~제9조)

## 4.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9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금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준 중위소득<sup>1)</sup>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기준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	8,514,994원	

-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시술에 따른 비용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 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급한다라고 지원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제한하고 다만, 보철 시술의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 시술이 필요한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면 최근 취업난과 월세 지출 및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플란트 및 보철 치과 시술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본 조례안 지원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음.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대상자별 기준 및 인원수 현황 1부. 끝.

## 구강보건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붙임 2

## 대상자별 기준 및 인원수 현황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가구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9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1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1인가구	1,337,067	1,559,912	1,782,756	2,005,601	2,228,445	2,451,290	<b>2,674,134</b>	2,896,979
2인가구	2,209,565	2,577,826	2,946,087	3,314,348	3,682,609	4,050,870	<b>4,419,131</b>	4,787,392
3인가구	2,828,794	3,300,260	3,771,726	4,243,191	4,714,657	5,186,123	<b>5,657,588</b>	6,129,054
4인가구	3,437,948	4,010,939	4,583,930	5,156,922	5,729,913	6,302,904	<b>6,875,896</b>	7,448,887
5인가구	4,017,441	4,687,015	5,356,588	6,026,162	6,695,735	7,365,309	<b>8,034,882</b>	8,704,456
6인가구	4,571,021	5,332,858	6,094,695	6,856,532	7,618,369	8,380,206	<b>9,142,043</b>	9,903,880

#### ※ 중위소득이란

: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함.

‘평균 소득’ 과 다른 개념으로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매년 7~8월 경에 다음 년도의 중위소득을 발표함.

### □ 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중위소득32%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8%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인가구	713,102	891,378	1,069,654	1,114,223	
2인가구	1,178,435	1,473,044	1,767,652	1,841,305	
3인가구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9	
4인가구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7	
5인가구	2,142,635	2,678,294	3,213,953	3,347,868	
6인가구	2,437,878	3,047,348	3,656,817	3,809,185	
금천구	<b>756명</b>	<b>123명</b>	<b>451명</b>	<b>1명</b>	<b>1,131명</b>

### □ 2024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

: 경제적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약간의 재산과 근로 능력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을 말함

	1인가구	1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천구
중위소득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b>618명</b>